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9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 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중 "현황조사"를 "보고 및 현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조사·분석을 위하여"를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 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중 "제45조의2제1항"을 "제4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 현황조사 등) <신 설>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 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 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 ② -----제1항에 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 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 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 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 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3) ----------제2항---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 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 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u>제45</u>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 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다.

제92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신 설>

<u>2.</u> <u>제45조의2제2항</u>을 위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④</u> 제2항
,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u>제45</u>
조의2제2항
<u>.</u>
제9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u>으로 보고한 자</u> 3. 제45조의2제3항
り./川付しユーコ <i>ム</i> /川しる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u>3.</u> (생 략) ③・④ (생 략)

1	(혀 해	제3호와 같음)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